

의안번호	제 744 호
의결 연월일	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윤남진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5월 31일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(윤남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4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5월 31일

발 의 자 : 윤남진, 연종석, 송미애
원갑희, 이상정, 이상식
박형용

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의 위치, 사업, 사용료, 사용·수익허가, 관리 운영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정하고,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위치(안 제2조)
-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전시판매장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(안 제8조, 제9조)
- 판매장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0조)
-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(안 제14조)

3. 조례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2021. 5. 24. ~ 2021. 5. 29. (5일)
-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와 협의함
-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(이하 “판매장”이라 한다)은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(문화동)에 둔다.

제3조(사업) 판매장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내에서 생산된 중소기업제품 등의 전시·판매
2.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
3. 그 밖에 판매장 설치 목적에 부합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

제4조(전시·판매품의 범위) 판매장의 전시 및 판매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내에서 생산된 중소기업제품 및 특산품
2. 도내에서 생산된 농·축·수산물(가공식품 포함)
3. 도 전략산업 및 판매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
4.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판매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

제5조(판매장의 운영) ① 도지사는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

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용·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.

② 판매장 사용·수익허가 및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을 따른다.

제6조(사용자의 의무) ① 제5조에 따라 사용·수익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는 판매장 관리 및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판매장 시설물 등에 유지관리 책임을 가지며,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.

③ 사용자는 동일 지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(사용·수익 허가의 취소) 도지사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5조에 따라 판매장 사용·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8조(사용료) 판매장의 연간 사용료 요율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.

제9조(사용료의 감면) 도지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감경의 경우 그 범위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.

제10조(관리위탁) ① 판매장의 관리·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도지사는 판매장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판매장 관리·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한다.

③ 관리·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를 따른다.

제11조(판매장의 관리·운영규정) ① 사용자는 판매장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판매장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·개정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(장부의 비치) ① 사용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사무실 내에 기록·비치하여야 한다.

1. 사용·수익허가부
 2. 위·수탁계약서
 3. 정관(법인의 경우) 또는 운영회칙(그 밖의 단체)
 4. 전시판매계약업체 및 전시판매 상품 현황
 5. 현금출납부
 6.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
 7. 상품계정원장
 8. 운영예산서 및 결산서
 9.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및 납입영수증 등 그 밖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.

제13조(지도·감독) 도지사는 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지시를 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도지사는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판매장 폐점에 대한 사항
2. 판매장 이전 및 추가설치에 대한 사항
3. 그 밖에 판매장 운영에 있어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

제1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, 당연직 위원은 판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지원과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 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임기는 담당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16조(위원의 위촉 해제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해촉(解囑)을 희망한 경우
2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4.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(非違)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5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7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.

제18조(회의·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정책집행에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.

제19조(수당지급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참석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0조(적용)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21조(존속기한) 제14조에 따른 위원회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영 중인 판매장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판매장으로 본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조의2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제21조(사용·수익허가기간) ①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, 그 기간은 20년(이하 이 조에서 “총 사용가능기간”이라 한다)을 넘을 수 없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·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.

제22조(사용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(料率)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.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
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제25조(사용·수익허가의 취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한 경우

2.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
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

4.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
5.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·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

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3조(사용·수익허가의 방법)

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8.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 제품 등을 생산·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,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)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(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)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17조(사용료 감면)

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“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·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을 허가한 경우

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.

1.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: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

2. 제1호 외의 경우: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(도청점)의 위치,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부과·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, 전시판매장 관리위탁 시 관리·운영에 관한 비용 일부 지원, 판매장 비치 장부·서류에 관한 사항 등을 전부개정하여 전시판매장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시판매장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중소기업전시판매장 사용·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발생
- 중소기업전시판매장 관리위탁에 따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

3. 관련조문

- 조례(안) 제8조(사용료), 조례(안) 제9조(사용료의 감면), 조례(안) 제10조(관리위탁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사용료 부과
-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관리위탁 시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

나. 추계 결과

- 연간 사용료(재산평가액 × 사용(대부)료율)
⇒ 169,762,670원(재산평가액) × 10/1000(사용(대부)료율) = 1,697,620원 ※ 부가세 별도
※ 조례(안) 제9조에 따라 30/100 감경 시 1,188,334원
- 판매장 관리위탁에 따른 관리·운영비 일부 지원 : 5,0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

- 세외수입, 도비(자체재원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1)	2차년도 (2022)	3차년도 (2023)	4차년도 (2024)	5차년도 (2025)	합계
세 출						5,000	5,000
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관리·운영지원						5,000	5,000
재원조달							
자체 수입	소계		1,697	1,697	1,697	1,697	6,788
	세외수입		1,697	1,697	1,697	1,697	6,788